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5. 3. 12.(수) 14:30~16:40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위 원장



간 사 이형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회의 회의록

2025. 3. 12.

사법정책자문위원회

I. 개요

- 일시: 2025. 3. 12.(수) 14:30~16:4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권오곤(위원장)
 - 김영화, 김정욱, 이경춘, 전원열, 조현욱, 차병직(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이형근(간사), 이문렬(서기)
- 배석자
 - 이종기, 이지영(이상 주무위원)
 - 민동근(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장), 이진서(민사지원제2심의관), 박경원(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부단장), 전재훈(민사지원제2심의담당실 사무관)
 - 황인성(실무지원단장), 이승일, 이지웅, 고원혁(이상 실무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개회선언 및 신임 위원 인사말씀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발언과 김정욱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었음
 - 위원장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동안 애써주신 김영훈 위원의 후임으로 신임 김정욱 위원께서 방금 위촉식을 마치고 오셨는데, 한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음
 - 김정욱 위원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함. 법조계에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음

2. 제8차 회의 회의록 확정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을 확정하였음

3.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실무지원단 구성변경 보고

- 확인성 실무지원단장, 다음과 같은 구성원 변경 사항을 보고함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김영훈 위원 → 김정욱 위원
 - 전문위원 제1연구반 이창경 주무위원 → 이종기 주무위원
 - 실무지원단 이재혁 인사제도 연구심의관, 정재우 형사지원심의관 → 이혜랑 형사지원심의관, 김지건 형사지원심의관, 이필복 사법정책심의관

4.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

가. 추가발제

- 민동근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장, 사법보좌관 명칭 변경 관련 설문조사 시행 결과를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발언 및 김정욱 위원의 의견, 이지영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음
 - 위원장
 - 지난 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대체로 찬성하는 취지였으나, 변호사 직역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입장도 있었음. 이에 대하여 변호사 직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며, 비쟁송적 사건에 대한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방향이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주된 의견이었음. 신임 위원이신 김정욱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람



○ 김정욱 위원

- 사법보좌관 관련 문제가 조금 생소한 면이 있어 당장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움.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내에서도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취합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이지영 주무위원

- 법원조직법 개정 단계가 되면 국회 전문위원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나 대한법무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식적으로 의견조회를 요청할 것임. 또한 정부안으로 발의될 경우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있을 것임

○ 김정욱 위원

- 신임 위원으로 위촉되어 처음 참석하게 된 관계로 원론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겠음. 기본적으로 법관의 중원을 통한 사건의 신속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이는데, 비법조인인 법원공무원의 업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 이지영 주무위원

- 지난 회의의 논의 경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음. 20년간 사법보좌관 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며, 해당 업무들이 법관에게는 부수적인 업무로 치부되어 처리기간이 오래 걸렸는데 사법보좌관에게 이관된 후에는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불복률도 떨어진다는 성과분석을 하게 되었음
- 법관의 중원에 비해 사건의 증가 속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관은 분쟁성이 큰 사건을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비쟁송적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논의가 시작되었음

○ 김정욱 위원

- 변호사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법조인이 과포화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연구원과 같이 법원에서 법조인들을 더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음
- 또한, 법관의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이관하는 것이 재정적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거나 그 외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



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 위원장

- 이지영 주무위원께서 설명해주셨듯이, 사법보좌관제도가 20년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업무영역이 확대되어 왔고 그로 인해 여러 업무영역에서 업무처리 속도가 향상되고 불복률이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법률안 개정 단계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 재야 법조인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전제로 건의문(안)을 의결하는 것이 합당해 보임

○ 김정욱 위원

- 오늘 안건은 지난 회의에 이어 추가로 논의중인바 신임 위원으로서 금일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움. 금일 의결은 기권하고 추후 변협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입장을 발표하고자 함. 실질적으로 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가 추진될 때에는 재야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꼭 병행되기를 희망함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사법보좌관은 2005년 제도 시행 이래 강제집행 등 비쟁송적 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법관의 역량을 본안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분쟁성이 높은 사건과 낮은 사건 모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을 분쟁성이 낮은 신청사건 등에 확대하고, 업무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사법보좌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그 역할에 맞는 자궁심과 동기를 부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개선방안

- 법원조직법에서 사법보좌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 2014년 이후 네 차례의 업무영역 확대 경과,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영역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



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사법보좌관의 업무영역에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석사법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사법보좌관을 비롯한 법원공무원의 교육·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사법보좌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법보좌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관의 직명을 업무영역 및 직무성격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5:00경 정회

※ 15:10경 속회

5.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방안

가. 기초발제

- ▣ 이종기 주무위원, 시니어판사 제도 검토의 필요성, 시니어판사 제도 관련 논의 및 입법추진 경과,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취지 및 우려, 시니어판사 제도 관련 참고 사례, 제도 설계방안 검토,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 경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이경춘 위원, 김영화 위원, 전원열 위원, 김정욱 위원, 조현욱 위원, 차병직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층연구를 해주신 전문위원 연구반 위원분들께 감사드림. 시니어판사 제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함.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경륜 있는 판사에 의한 재판에 대한 수요와 갈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함

○ 이경춘 위원

- 과거 법관 재직 시절에도 동료 법관들과 시니어판사 제도가 도입된다면 법관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떠올랐음

- 법관의 정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정규법관으로서의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법관으로서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접근할 수도 있음. 과거부터 논의가 되어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도입을 시도해 볼 때가 된 것 같음.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이라는 큰 방향성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함

○ 김영화 위원

- 법관이 아닌 사람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에도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정년 이후 적정량의 일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하는 것 같음.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도 법관의 가동연한이 우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은 없을 것이라 생각함
- 다만, 고령판사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식시키는 범위 내에서 업무의 양과 내용을 적정하게 조율하면 국민들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임

○ 전원열 위원

-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차단할 필요성이 높고 경륜 있는 판사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도 있기 때문에 시니어판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다만 미국과는 상황이 다른 면이 있음. 미국은 연방대법원에서 정년제도가 위헌이라고 선언을 하였음. 정년제도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로 보기 때문에, 업무 평정 등을 통해 실제 본인이 업무수행을 계속할 수 없다는 부담을 느끼게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미국은 65세 정도에 다다르면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상당한 재산이 축적됨에 따라 은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비교적 업무강도가 낮고 권위도 있고 보수도 좋은 법관이나 교수의 경우에는 유독 은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종신보장을 받은 연방판사의 은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시니어판사 제도임



- 반면 한국 사회는 전반적으로 가능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강함. 그런 면에서 일반인과 달리 판사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과 질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음
- 시니어판사 제도의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의 면에서 걱정이 되기도 하며, 고비용·저효율의 제도로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음. 또한 수도권 편중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니어판사들이 지방권으로 가서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운영하면 지원률이 떨어질 수 있고, 수도권에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업무 효율이 높은 30대~50대 판사들의 자리를 빼앗게 되는 것 같아 염려됨
- 한편 한국의 재판지연에 대해서는 사건의 복잡화나 사건 난이도의 상승에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기본적인 재판제도의 설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미국에서는 디스커버리를 거쳐서 재판으로 넘어온 1~2%의 사건에 대해서만 재판절차를 진행하면 절차가 종결됨.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증거의 양도 굉장히 적으며, 단기간에 배심이 볼 수 있는 것만 추려서 제출되기 때문에 법원의 부담이 적고 판사 증원의 필요성도 적음.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의 경우에도 관련성이 떨어지는 증거는 법관이 엄격히 통제하여 쉽게 받아들이지 않음. 이와 달리 한국은 재판구조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법관 인력이 많이 투입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음

○ 위원장

- 시니어판사 제도가 전관예우로 인한 폐해 방지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법관처우 개선 면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림
- 전원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연방법원 판사는 정년이 없지만 그 분들이 은퇴를 결심하게 되는 유인책 중 하나는 월급 상당의 평생연금임. 연금 등 분야에 예산을 투입하는 비용이 전관예우와 같은 암시장에서 소요되는 부정적 비용 보다 덜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시니어판사 제도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최적의 대책은 아니며,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법관처우 및 연금의 획기적인 개선 등을 따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법원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 대리를 받을 기회, 전관예우의 폐해를 없애는 것 등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음

○ 김정욱 위원

- 시니어판사 제도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음. 법관에 대한 특별대우처럼 외부에 비춰질 소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전관예우 방지, 재판지연 해소, 전문성의 충분한 활용과 같은 점을 명분으로 충분히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 다만 시니어판사들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제도는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조현욱 위원

-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에 찬성함. 법원 입장에서는 정원이 실제로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면서 법관의 업무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변호사업계 입장에서는 전관예우의 폐해를 막고 경륜 있는 법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시니어판사 개인 입장에서도 변호사 업계로 진출하지 않고 계속 법원에서 근무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업무량과 급여를 동시에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비용·저효율의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함

○ 차병직 위원

-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은 현실적 필요에 따른 당연한 추세의 하나라고 생각함
-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하여, 정원 외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은퇴한 사람에게 법관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므로 법률 제·개정이 필요해 보임. 결국 법관의 정원을 늘리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텐데, 판사정원법의 판사 수를 늘리기 쉽지 않아서 고안한 제도가 결국 같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됨. 또한 시니어판사 제도를 채택하게 되면 판사정원법의 판사 증원을 포기하는 수순으로 가는 것이 아닐지 걱정되는 면도 있음
- 한편, 시니어판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전관예우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모든 법관의 퇴직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퇴직하는 법관이 줄어들면 전관예우의 효과를 더욱 크게 볼 수 있는 유인이 있음. 따라서 시니어판사 제도와 전관예우 폐단 방지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조현욱 위원, 차병직 위원, 전원열 위원, 김영화 위원, 김정욱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간사, 이종기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대체로 위원님들께서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셨음. 정원 외 판사와 같은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 담당 주무위원께서 보충 설명 해주시기 바람

○ 이종기 주무위원

- 회의자료 98면 이하에 법률안 예시가 있고, 특히 법원조직법상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개별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60면 이하에 설명되어 있음

○ 조현욱 위원

- 회의자료 98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음. 법원조직법 제45조제5항 ‘제4항에 규정된 판사의 정년’ 부분과, 제52조의1제1항 ‘제45조제5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판사’ 부분을 일반 국민이 시니어판사 제도에 관한 것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제4항에 규정된 시니어판사의 정년’, ‘제45조제5항에 따라 정년이 연장된 시니어판사’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을 제안드림

○ 이종기 주무위원

- 추진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음

○ 차병직 위원

- 조금 전 발언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겠음. 판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헌법상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에 대응하여 판사가 아닌 법관을 설정해야 하는 문제와 사실상 판사가 중원된 것과 같으므로 앞으로 정식 판사 중원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를 말씀드린 것임

○ 위원장

-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 판사의 예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이종기 주무위원



- 대표적으로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가 있음
- 위원장
 -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보직 중에서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 이종기 주무위원
 - 현재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다 정원에 포함됨
- 위원장
 - 차병직 위원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림. 정원에 들어가지 않는 판사가 재판업무를 담당해도 되는 것인지?
- 전원열 위원
 -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헌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헌법에서 재판은 판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원 외의 재판을 하는 판사를 둔다는 것은 자기모순인 것 같음. 입법 추진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위원장
 - 전문위원연구반 논의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이 없었는지?
- 이종기 주무위원
 - 전원열 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취지의 지적이 나오기는 하였음. 그런 우려에서 당시 전문위원 중에서는 시니어판사의 정원을 별도로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분도 계셨음
 - 정원과 관련하여, 미국연방법원의 시니어판사도 판사 정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산정 문제와 재판업무 담당 여부는 분리해서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함
- 조현욱 위원
 - 이종기 주무위원과 같은 의견임. 시니어판사는 판사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정원 내인지 정원 외인지가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와는 관련이 적다고 생각함
- 전원열 위원
 - 입법 추진 과정에서 그렇게 봐준다면 좋겠지만,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다른 면이 있음. 한국에는 판사이면서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판사가 재판연구관이나 사법연수원 교수 정도이며, 이들은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정원에서 제외됨. 그러나 미국은 엄청나게 다양한 판사가 존재함. 연방헌법 제3조에 규정된 판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원에 포함된 판사이지만, 그 외에도 회생법원, 도산법원 등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판사가 있음
- 연방헌법 제3조에 규정된 판사가 아닌 판사들 중에 시니어판사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문제가 극복될 수 있을지 염려되는 면이 있음

○ 김영화 위원

- 법관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검찰도 같이 요구할 텐데, 그에 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 이종기 주무위원

- 일반판사의 경우 판사정원법이 개정되어 판사가 증원될 때마다 통상적으로 검사도 증원해 왔던 경향이 있으나, 작년의 경우에는 판사만 증원되었음
- 시니어판사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검사의 정원 부분을 특별히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지는 않음

○ 간사

- 보충설명 드리겠음.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은 ‘판사의 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시니어판사의 경우 정년이 연장되는 65세~70세의 법관 중 선별하여 임용을 하고 업무를 감축하는 형태로 운영됨. 따라서 시니어판사를 정원 내에 포함시키게 되면 오히려 사건처리의 양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기술적으로 개정하는 논의를 거치게 된 것임
- 결국 핵심은 시니어판사가 판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헌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판사의 수가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음

○ 위원장



- 만일 시니어판사를 정원에 포함시키게 될 경우 ‘업무량에 따라 정원도 이에 대응하여 0.5명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이종기 주무위원

- 정원 외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최후의 방안으로 정원산정방식 특례를 넣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 위원장

-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 이종기 주무위원

- 1/2 단축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반으로 계산하고 있음

- 조현옥 위원

- 시니어판사 제도와 큰 관련은 없지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말씀드림. 육아기 아동을 키우는 여성 판사들은 업무량을 1/2로 줄이더라도 판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임. 단축근무 시 정원을 1/2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육아기 아동을 둔 판사들을 통해 줄어든 정원 부분만큼 추가적으로 판사의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발언 및 이경춘 위원, 김영화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정원 문제 외에 처우, 연금, 업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이경춘 위원

- 종래 원로법관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는지 의문이 있었음. 법관의 정년이 63세에서 65세로 확대된 취지를 고려하여 원숙한 법관들이 좀 더 중요한 일에 자부심을 갖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고령 법관에게 근무유인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근무환경이 제공되지 못하여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음

- 원로법관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정년 이후에 더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출곧 생각해 왔기 때문에, 시니어판사 제도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찬성함.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해 보임

○ 김영화 위원

- 담당업무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음.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법관의 경우에도 65세 정년 이후에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 정서상 경륜 있는 판사가 지혜롭고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시니어판사가 지나치게 단순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법관들이 풍부한 경험과 원숙한 식견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재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중도 사직 및 퇴직에 따른 재판역량 감소와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공정한 최적의 재판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관의 정원과 정년의 제한에 얹매이지 않으면서 최대한 재판역량을 발휘하고 동시에 안정적인 재판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관직 운용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② 개선방안

- 풍부한 재판역량을 가진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경륜에 걸맞은 적정한 양과 종류의 재판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최적의 재판이 국민에게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판사의 생애주기에 따른 재판업무의 양과 종류를 적정하게 조정하면서도, 그 운용 과정에서 불균형이나 판사 정원 제한으로 인한 인력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제10차 회의 안건 설명



■ 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

- 이지영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사법지원 제고 방안의 지향점,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7. 제11차 회의 안건 선정

- 위원장, 제11차 회의 안건으로 ‘법관에 대한 대외적 부담 요인 분석과 법관의 보호 방안’, ‘법원공무원 평정비율 개정 등’을 선정함

8.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9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결정함

9.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9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8차 회의 회의록	공개
2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실무지원단 구성 변경 보고	공개
3	사법보좌관제도 발전 방안	공개
4	시니어판사 제도 도입 방안	일부 비공개
5	안건 설명자료(장애인 등을 위한 사법지원 제고 방안)	공개

III. 다음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10차 회의

- 일시: 2025. 4. 9.(수) 14: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끝).